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안) 관련 공청회

2009. 12. 16(수) 15: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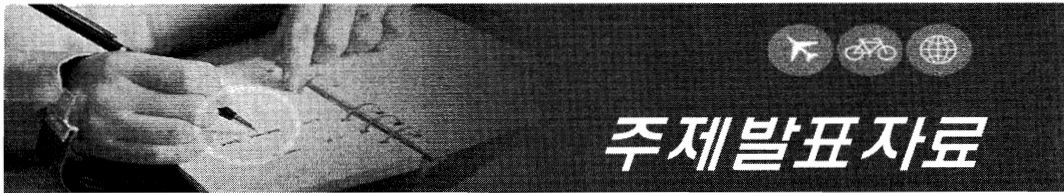
노인 지원 과

□ 공청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5:00~15:10	'10 · 추진배경 및 인사말씀 : 김정석 노인정책관
15:10~15:20	'10 · 환영사 :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15:20~15:50	'30 · 주제 발표: - 좌장 : 진민자(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 발표 : 장사시설 5개년 수급계획안 및 지침안 김수봉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50~16:50	'60 · 패널토론 - 토론 : 강동구(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교수) 황진자(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박태호(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안도걸(기획재정부 복지에산과장) 전병국(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조병옥(환경부 자연정책과) 김태훈(경기도 노인지원과장) 강명석(수원시 위생정책과장) 서종빈(평화방송 기자) 신승일(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장)
16:50~17:00	'10 휴 식
17:00~17:30	'30 질의 및 응답
17:30~18:00	'30 정리 및 폐회

< 일 정 표 >

시 간	내 용	
15:00 ~ 15:10	'10	· 개회 및 소개 : 진민자 좌장(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15:10 ~ 15:20	'10	· 추진배경 및 인사말씀 : 김정석(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
15:20 ~ 15:50	'30	· 장사시설 5개년 수급계획안 및 지침안 : 김수봉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50 ~ 16:50	'60	· 패널토론 - 좌장 : 진민자(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 토론 : 강동구(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교수) 황진자(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박태호(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안도걸(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전병국(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조병옥(환경부 자연정책과) 김태훈(경기도 노인지원과장) 강명석(수원시 위생정책과장) 서종빈(평화방송 기자) 신승일(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장)
16:50 ~ 17:00	'10	휴 식
17:00 ~ 17:30	'30	질의 및 응답
17:30 ~ 18:00	'30	정리 및 폐회



☑ **장사시설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박사)

☑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수급계획지침(안)**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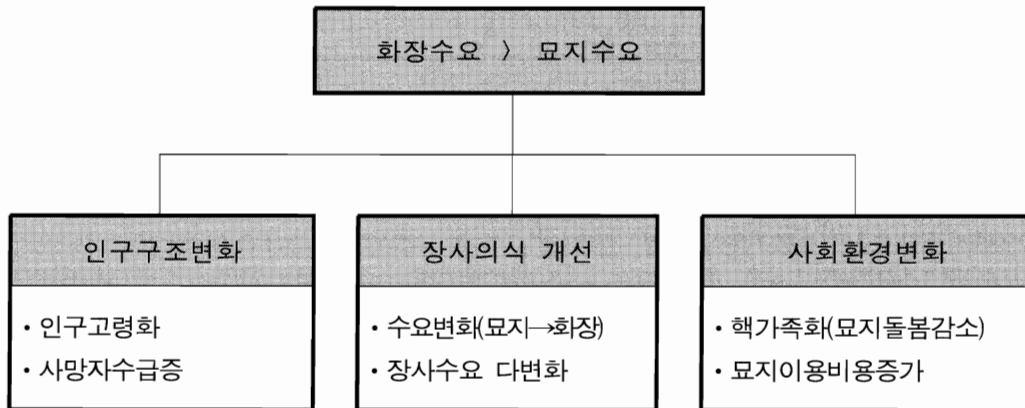
장사시설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안)



I. 종합계획의 필요성

1. 장사문화 환경의 변화

- 묘지(돌봄)수요 감소
 - 사회·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장사문화 수요변화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로 편의주의 확산
- 화장수요 증가
 - 장사 선호변화: 매장 선호(19.6%), 화장 선호(80.4%)
 - ※ 자연장 수요의 증가(2009년 국민의식조사결과 화장선호자 중 52.4%)
 - 화장율의 지속적 증가 (화장률 2000년 33.7%→'08년 61.9%)
 - 지역개발 및 묘지이장 등에 따른 개장수요증가



2. 장사시설 공급 불균형과 시설이용 차별 심화

가. 장사시설 공급 불균형

- 장사시설 설립부지 마련의 어려움
 - 장사시설에 대한 비선호시설 인식(남비현상) 증가
 - 인구밀집형 도시(수도권)의 시설부지 부재
- 재원조달의 어려움
 - 시설유치를 위한 갈등해소비용(인센티브비용) 증가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취약
- 장사시설 공급 불균형
 - 화장시설 설치의 어려움
 - 공설봉안시설의 부족
 - 사설봉안시설의 공급과잉

나. 장사시설 이용의 차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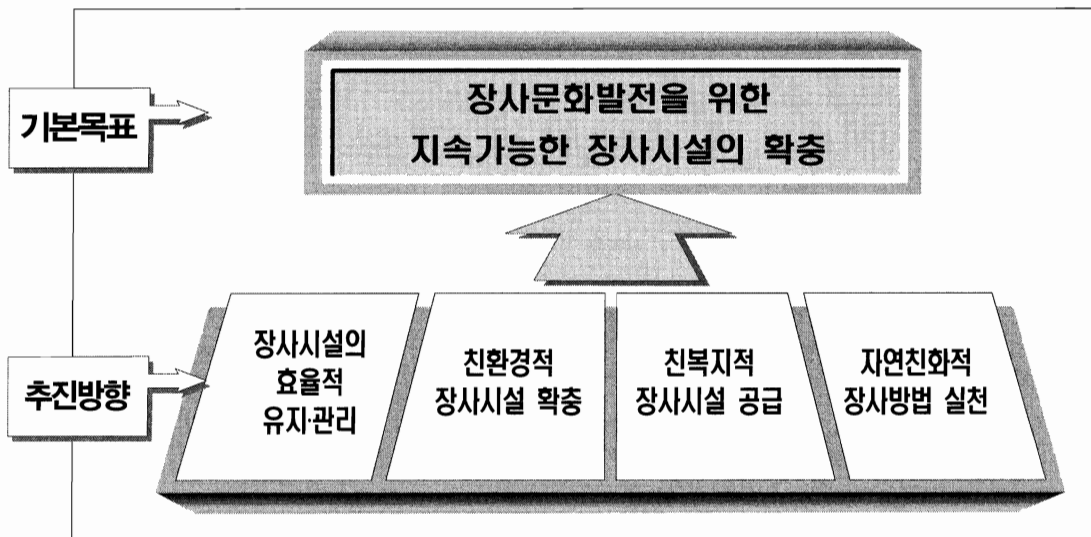
- 장사시설 이용제한 및 이용료 차별
 - 공설시설 이용 시 관외주민 이용제한
 - 관·내외 주민 간 시설이용료 차이 심화
 - ※ 화장장이용요금: 관내·외 주민간 사용료 격차: 성남시 20배, 인천광역시 16.7배임
- 시설이용의 어려움
 - 특정종교재단의 과잉시설: 종교 차이로 인한 이용기피현상
 - 자치단체간의 이해상충 및 주민들의 반대
 - ※ 공설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치단체의 경우, 위탁자치단체의 주민거부로 인한 사용의 한계

3. 저출산 고령사회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장사문화 환경조성

-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친화적, 자연친화적 종합장사문화시설 조성
- 장사시설의 부정적 외부효과해소, 긍정적 외부효과로 전환
 - 비생산적 시설에서 생산적 시설로
 - 주변지역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 비선호시설에서 선호시설로 전환(종합문화시설로 전환 ⇒ 기피시설에서 이용시설로)
- 장사시설의 적정 활용 및 효율적 설치
 - 유희시설의 적극적 활용
 - 공설봉안시설 우선 건립

II.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기본목표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사시설의 확충

나. 추진방향

1) 기존 장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 저출산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장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 시설을 잘 관리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장사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장사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임.
- 또한 사문화된 법조항들을 즉시 복원시켜야함. (예: 묘지 일제조사 실시, 사설화장시설·자연장시설 활성화, 시한부묘지제도의 철저 시행 등)

2) 친환경적 장사시설의 확충

- 장사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기존 시설을 자연회복차원에서 재정비·재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함.
- 이를 위해 기존묘지 개장·이장 후, 친환경적 자연장지 설치 유도함.
- 또한 화장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현대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화장시설운영토록 하고,
- 이를 위해서는 화장로의 적정처리 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임.

3) 친복지적 장사시설의 공급

- 신규 조성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장사문화시설로 설치 유도함.
 - ※ 종합장사문화시설은 교통이 편리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공원시설을 의미함. 따라서 이는 신도시등과 같은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 재개발지역 등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장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지역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따라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 또는 장례식장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또한 묘지재개발을 통한 택지조성 등으로 대량 화장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화장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임.

4)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의 실천

- 환경친화적 매장문화 확산
 - ※ 매장 시, 친환경적 장례용품 등의 사용
- 친환경적 화장시설 유지, 보수
- 봉안당 중심의 봉안문화 정착

- ※ 지나친 석물사용과 자연 미관을 저해하는 봉안묘, 봉안탑 설치 지양
- 자연친화적인 장례용품사용의 생활화
- 시민단체들의 친환경 장사방법실천운동 적극 지원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가. 장사시설의 수요변동추이

1) 사망자수

- 사망확률이 높은 후기노인의 증가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임

<연도별 사망자추이>

구분	2005	2008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사망자수(천명)	246	267	284	332	375	465	573	679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이』

2) 화장률 변동추이

- 1999년 30%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42.5%, 2005년 52.6%, 2008년에는 62%내외로 추정됨.
- 이 같은 증가율 추세라면 베이붐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0대 중반이후에는 80%, 장기적으로 85%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1).

<연도별 화장률 추이>

구분	'99	2000	'01	'02	'04	'05	'07	'08	'10	'20
화장률(%)	30.3	33.7	38.3	42.5	49.2	52.6	58.9	61.9	68.4	8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수립연구』

나. 장사시설 수급진단

1) 화장로시설

- 부족화장로수
 - 진단결과 2010년 대부분의 광역시와 경기도의 화장로 부족할 것으로 나타남.
 - 이같은 부족현상은 2010년대 중반부터 충북,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1) 김수봉 외,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7

〈봉안시설 수급진단〉

	총화장 수요(t)					공급(t)		봉안수요(t)=총화장수요(t) * 봉안율(t)					봉안시설_공급(t)= {(t-1)년도 공급능력 - 총화장수요(t)*봉안율(t)}									
	2010	2011	2012	2013	2014	2008.12	2009.12	50.0%	47.5%	2010	2011	2012	2013	2014	40.0%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291200	325496	353439	379237	406232	1714073	1571980	145600	154610	159047	161176	162493	1516875	1414650	1314136	1212644	1114829	(67833)	(120219)	(178752)	(238436)	(303113)
서울	43074	47676	51354	54703	58169	13593	-6627	21537	22646	23109	23249	23268	21537	21537	22646	23109	23249	23268	23268	23268	23268	23268
부산	21879	24093	25783	27303	28880	6221	-80	10939	11444	11602	11604	11552	10939	10939	11444	11602	11604	11552	11552	11552	11552	11552
대구	13730	15330	16628	17824	19075	13767	11709	6865	7282	7482	7575	7630	6865	6865	7282	7482	7575	7630	7630	7630	7630	7630
인천	16046	17874	19358	20740	22178	15025	-15955	8023	8490	8711	8815	8871	8023	8023	8490	8711	8815	8871	8871	8871	8871	8871
광주	8395	9480	10378	11210	12086	4055	2217	4197	4503	4670	4764	4834	4197	4197	4503	4670	4764	4834	4834	4834	4834	4834
대전	9849	10981	11909	12769	13672	22497	20262	4925	5216	5359	5427	5469	4925	4925	5216	5359	5427	5469	5469	5469	5469	5469
울산	5384	6031	6573	7090	7633	0	0	2692	2865	2958	3013	3053	2692	2692	2865	2958	3013	3053	3053	3053	3053	3053
경기	51496	57822	63132	68150	73429	792757	771916	25748	27466	28409	28964	29372	25748	25748	27466	28409	28964	29372	29372	29372	29372	29372
강원	15314	17205	18754	20201	21724	81487	79402	7657	8173	8439	8585	8690	7657	7657	8173	8439	8585	8690	8690	8690	8690	8690
충북	7513	8454	9230	9953	10709	91500	88409	3757	4016	4153	4230	4284	3757	3757	4016	4153	4230	4284	4284	4284	4284	4284
충남	13796	15543	17010	18365	19771	202879	194793	6898	7383	7654	7805	7908	6898	6898	7383	7654	7805	7908	7908	7908	7908	7908
전북	17020	19100	20805	22337	23949	51640	46405	8510	9073	9362	9493	9580	8510	8510	9073	9362	9493	9580	9580	9580	9580	9580
전남	14923	16781	18294	19663	21098	64261	61402	7462	7971	8232	8357	8439	7462	7462	7971	8232	8357	8439	8439	8439	8439	8439
경북	23085	25870	28123	30183	32339	79861	76377	11543	12288	12655	12828	12936	11543	11543	12288	12655	12828	12936	12936	12936	12936	12936
경남	23239	25965	28128	30080	32142	233261	225266	11620	12333	12658	12784	12857	11620	11620	12333	12658	12784	12857	12857	12857	12857	12857
제주	6457	7290	7981	8667	9377	41269	39145	3229	3463	3591	3683	3751	3229	3229	3463	3591	3683	3751	3751	3751	3751	3751

주: 봉안시설_공급(t)은 시설이 남는 지역만을 합한 수치임. ()내는 봉안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필요봉안구 수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화장로 수급진단 >

	공급 (‘09)	필요 화장로수						부족 화장로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240	238	268	297	325	340	364	-32	-55	-77	-101	-114	-134
서울	23	33	38	42	46	48	51	-10	-15	-19	-23	-25	-28
부산	15	18	20	21	24	25	26	-3	-5	-6	-9	-10	-11
대구	11	11	13	15	16	16	17	0	-2	-4	-5	-5	-6
인천	15	14	15	16	18	19	20	1	0	-1	-3	-4	-5
광주	7	7	8	9	10	10	11	0	-1	-2	-3	-3	-4
대전	7	8	9	10	11	11	13	-1	-2	-3	-4	-4	-6
울산	4	5	6	6	7	7	7	-1	-2	-2	-3	-3	-3
경기	24	40	46	51	55	60	64	-16	-22	-27	-31	-36	-40
강원	19	13	14	16	17	18	20	6	5	3	2	1	-1
충북	16	7	7	8	9	9	10	9	9	8	7	7	6
충남	14	11	13	15	16	17	18	3	1	-1	-2	-3	-4
전북	14	14	16	17	19	20	21	0	-2	-3	-5	-6	-7
전남	13	13	14	16	17	18	19	0	-1	-3	-4	-5	-6
경북	20	19	21	24	26	27	29	1	-1	-4	-6	-7	-9
경남	33	19	21	24	26	27	29	14	12	9	7	6	4
제주	5	6	7	7	8	8	9	-1	-2	-2	-3	-3	-4

주: 화장로 1기당 일평균 3.5구 처리, 예비로 10% 가정

2) 봉안시설

- 봉안시설에 대한 선호는 조사결과 22.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사망을 앞두고 있는 노년층의 선호는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목표율을 정해 총화장수요의 50%에서 점감하는 것으로 가정
- 2010년 안치능력은 약 845천위로 예측되며, 신규 조성되지 않는다면, 서울, 인천, 울산 등의 경우에는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봉안시설 수급진단>

	공급 (‘10)	총화장 수요의					봉안시설_공급부족				
		50%	47.5%	45%	42.5%	4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845222	145600	154610	159047	161176	162493	-	-	-	-	-
서울	161688	21537	22646	23109	23249	23268	-28245	-37078	-49175	-64989	-84988
부산	102275	10939	11444	11602	11604	11552	21833	22426	20419	15294	6590
대구	20898	6865	7282	7482	7575	7630	40914	39754	37151	32870	26689
인천	27699	8023	8490	8711	8815	8871	22124	18790	14189	8149	498
광주	14922	4197	4503	4670	4764	4834	5743	3456	553	-3019	-7328
대전	20397	4925	5216	5359	5427	5469	36337	36617	35639	33169	29001
울산	457	2692	2865	2958	3013	3053	333	-2221	-4931	-7777	-10757
경기	145946	25748	27466	28409	28964	29372	745177	799435	836174	851194	841158
강원	19800	7657	8173	8439	8585	8690	67497	67788	66096	62066	55379
충북	21918	3757	4016	4153	4230	4284	229918	248683	262691	270722	271829
충남	106010	6898	7383	7654	7805	7908	217692	239776	255612	263666	262730
전북	56076	8510	9073	9362	9493	9580	135010	143728	148549	148630	143260
전남	27337	7462	7971	8232	8357	8439	71983	73530	72885	69650	63463
경북	55033	11543	12288	12655	12828	12936	236326	251036	259904	261606	255059
경남	49810	11620	12333	12658	12784	12857	498501	536075	563203	577280	576232
제주	14955	3229	3463	3591	3683	3751	47406	49789	50858	50321	47954

주: 봉안수요는 총화장수요의 일정률 가정

3) 자연장시설

□ 자연장선호 현상은 2009년 조사결과 52.4%로 나타났으나, 실제 사망자의 수요는 공급시설부족 등으로 갑작스러운 증가보다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율로 가정함.

- 2010년 자연장 수요는 총 화장수요의 15%인 43,680위, 2014년에는 35%인 약 14만위 정도로 증가예상

<자연장 수요>

지역	총 화장 수요의				
	15.0%	20.0%	25.0%	30.0%	35.0%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43,680	65,099	88,360	113,771	142,181
서울	6,461	9,535	12,839	16,411	20,359
부산	3,282	4,819	6,446	8,191	10,108
대구	2,060	3,066	4,157	5,347	6,676
인천	2,407	3,575	4,840	6,222	7,762
광주	1,259	1,896	2,594	3,363	4,230
대전	1,477	2,196	2,977	3,831	4,785
울산	808	1,206	1,643	2,127	2,672
경기	7,724	11,564	15,783	20,445	25,700
강원	2,297	3,441	4,689	6,060	7,603
충북	1,127	1,691	2,307	2,986	3,748
충남	2,069	3,109	4,252	5,509	6,920
전북	2,553	3,820	5,201	6,701	8,382
전남	2,238	3,356	4,574	5,899	7,384
경북	3,463	5,174	7,031	9,055	11,319
경남	3,486	5,193	7,032	9,024	11,250
제주	969	1,458	1,995	2,600	3,282

주: 자연장 수요는 총 화장수요의 일정률 가정

다. 장사시설의 공급 방안

1) 기본방향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을 통한 자치단체별 수급균형유지

2) 공급원칙

□ 부족시설 우선 공급

○ 화장장 우선 공급:

- 화장수요에 적정 규모의 화장시설 확충(예비부지 확보)
- 자치단체 간 협정을 통한 공동사용·공동건설·공동운영 방안 강구

○ 자연장지 조성 방안

- 삼림지역의 수목장림은 공공부문(국가 또는 시도)에서 설치·운영
- 공설자연장지 조성은 시도 또는 자치단체가 우선 조성
- 사설자연장지 조성은 기존 법인묘지 (재)활용 방안 강구

- 봉안시설 적정수준 유지
 - 자치단체별 공설봉안시설 설치 의무화
 - 유휴 사설봉안시설 적극 활용

수요·공급일치하는 화장시설건립

- 자치단체시설: 광역시, 시, 군
 - 화장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화장시설 확충(예비로부지 확보)
 - 자치단체간 공동건립·공동운영제 도입
- 민간시설
 - 공공부문 확충 후, 선별적으로 설치 유도
 - 개장지역의 이동화장시설 등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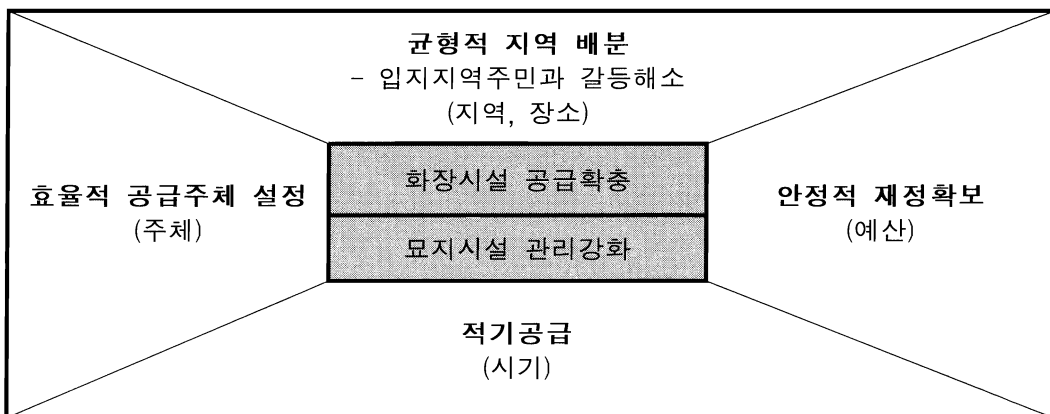
가.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1) 장사시설 확충의 기본방향

- 국토의 효율적, 효과적 이용을 위해서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해야 함
-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복지시설 차원에서 접근
- 장사시설의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의 장사시설 조성 필요

2) 장사시설 확충의 기본원칙

- 장사시설의 지역간 균형배분
-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
- 장사시설의 적기 공급
-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공급주체 설정



나.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1) 재정투자계획의 기본방향

- 자연친화적 장사시설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의 투명성 제고(중앙)
- 복지재정의 일정부분 이상의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배분(지방)

2) 국고지원 우선순위

- 화장장 신축조성사업
- 기존시설 현대화사업
 - 기존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
 - 화장로 개·보수(교체) 사업
- 봉안당(담·벽) 신·증축 사업

3) 국고지원의 차등지원

※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국고의 차등지원

(보조비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화장장 신축
 - 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차등지원
- 자연장지의 조성
 - 기존묘지 재개발(국고 차등지원, 50%에서 70%까지)
 - 택지개발지역등의 신규조성(지방재정에서 자체 충당)
- 화장시설 증·개축(보수)
 - 시설 보수의 경우 현행 50%에서 100%까지 차등지원
 - 또한, 재정 취약지역의 경우 관리운영비 지원 가능토록 함
- 공설봉안시설
 - 봉안당의 경우에 한하여 50%까지 지원

4)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자본 적극 유치

- 중규모 이상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 수도권, 광역권 등
- 택지개발, 신도시지역의 종합장사문화시설 건립하는 경우
- 인센티브 비용지출 과다 예상 지역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가. 기본방향

-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장사문화 개선·발전
 - 가정의례 및 장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장사문화 발전전략 홍보계획 수립 및 시민의식 개선운동

나. 중·장기계획

-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식개선 전환운동 전개
 - 삶과 죽음의 공간을 분리하는 장사문화 정책 지양
 -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전환
- 과거, 현재, 미래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종합문화시설로 승화
 -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각적인 시설로 활용
 -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적 외부효과 유인
- 수요중심의 장사문화산업 활성화
 - 장사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명성, 합리성 제고
 - 장사시설의 운영관리 및 시설에 대한 평가실시(지표개발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등 수요자중심의 장사문화산업 유도
 - 장사관련 정보를 언제나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장사정보안내센터 설치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사관련 정보 및 안내 등을 제공할 있는 장사길라잡이
 - 인터넷을 이용한 장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장사시설 종합안내(위치, 사용료 등), 장사절차 및 관련자료 등의 제공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가. 지역 간 수급계획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장사시설설치의 한계
 - 재원조달의 한계(갈등해소 비용증가·과다)
 - 갈등의 다양화(주민과의 갈등 / 자치단체 간의 갈등)
 -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식개선의 필요성(부정적 외부효과 → 긍정적 외부효과로 전환)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수급계획을 통한 장사시설확충 방안 모색
- 수요급증 ⇒ 시급성 존재
 - 장사시설 수요급증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인프라부족
 - 지역간 불균형발생(인구밀집형 광역시, 도시를 중심으로 시설부족 심각)
-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제시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장사문화시설을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공급계획에 기여

나. 지역간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 장사시설 과잉투자 억제
 - 지역간 비선호시설 상호이용협약을 통한 장사시설 이용차별 완화

- 지역간 공설장사시설 상호이용협약체결
 - 장사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 장사시설 운영
 - 장사시설 이용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이용
 - 관리운영비 상호이체협약을 통한 사후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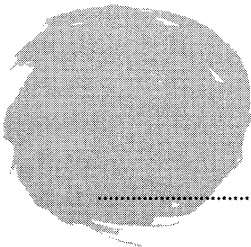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가. 장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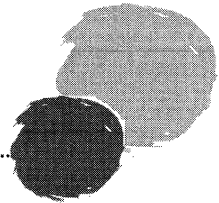
- 장사관련 평가사업 실시
 - 정책평가: 수급계획 실천, 예산 등
 - 시설평가: 사설, 공설시설의 유지·관리 등

나. 장사시설확충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수급계획 평가·조정
- 장사시설확충을 위한 갈등조정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수급계획지침(안)**



I. 중장기 수급계획

□ 중장기 수급계획의 목적

- 이 지침은 장사(葬事)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것임.

□ 중·장기계획의 의의

- 중·장기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장사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장사시설확충을 위한 전략계획임.

□ 지위와 성격

- 상위계획인 장사시설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의 주민을 위한 장사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실천계획임.

II. 중장기계획의 내용

□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 (시행령 4조 3항)

-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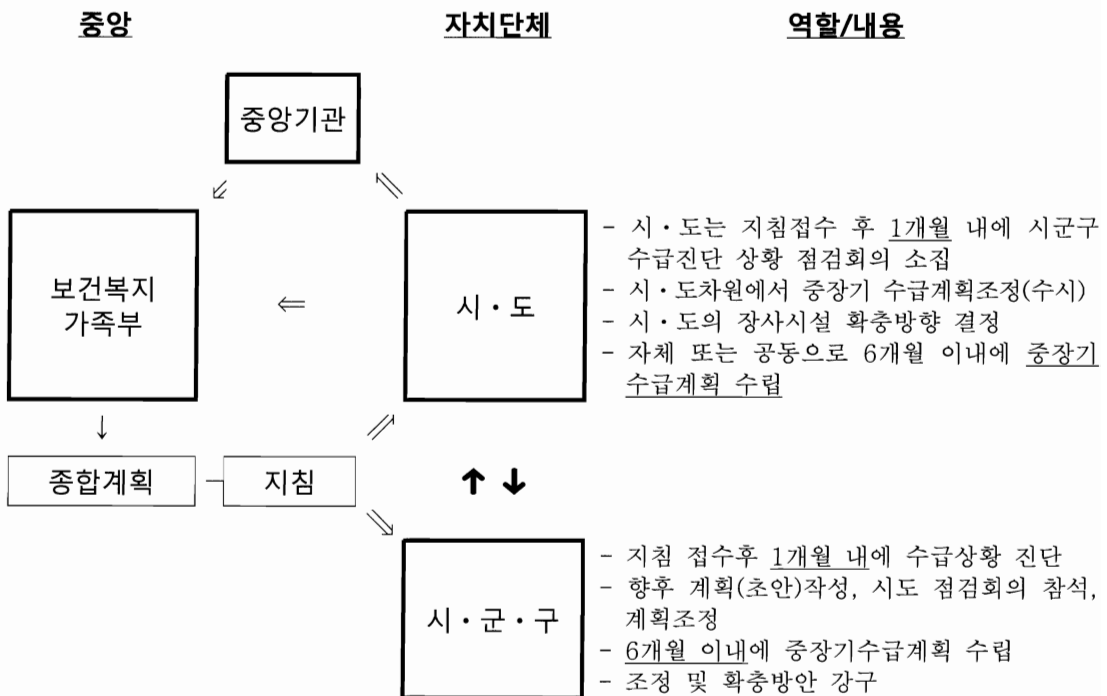
가.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 (1) 장사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장사시설 확충
- (2) 부족한 장사시설 적기공급
- (3) 장사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정보호
- (4) 장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나. 중장기계획의 기본원칙

- (1)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수용
- (2) 지역사회의 수요에 근거한 장사시설 공급
- (3)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

※ 중장기계획 흐름도



※ 수급상황 진단 시에는 과거의 장사시설 확충계획·사례 및 부지선정, 재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가. 인구변동 추이 작성

- 주민등록상의 상주인구추이
- 자연적 증가요인: 출생아 및 사망자 수
- 사회적 증가요인: 전입자 및 전출자 수

나. 작성원칙

- 인구변동 추이 작성은 과거 5~10년간 자료를 집계함.
 - 모든 자료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로 집계
 - 추가적으로 가능하면 출생아 및 사망자 수는 월별로 추가적으로 작성
- ※ 부록 집계표 참조(엑셀파일로 작성)
- ※ 인구증감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 - 신도시조성, 택지재개발 및 공단조성 등 - 에 관한 정보 부기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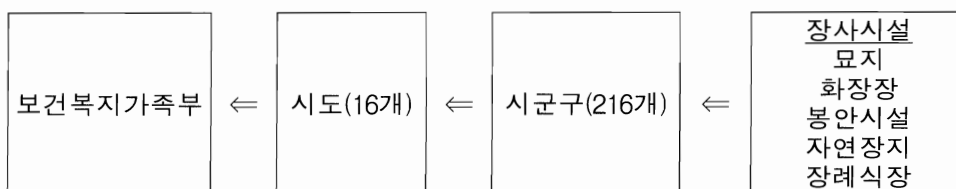
가. 장사시설 수요 추이 작성

- 매장자 및 화장자 수 추이
- 화장후 처리 방법
 - 봉안자 수, 자연장 자, 유택동산(산골) 이용자 수 등

나. 작성원칙

- 장사시설 이용 추이 작성은 과거 5~10년간 자료를 집계함
 - 부록 집계표 참조(엑셀파일로 작성)
- 전국 각 시군구장사시설 관리운영 책임자는 시설이용자의 장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지역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보고

※ 장사관련 정보의 자료 구축 흐름도



- 각 장사시설 관리운영책임자는 시설사용자 또는 안치자의 성, 연령, 주소, 장사방법 및 안치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분기별로 관할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토록함.
- 전국 각 장사시설에서 수집된 자료는 각 시군구에 분기별로 보고, 각 시군구는 차년도 1분기 말까지 시도에 보고, 시도는 중앙에 즉시 보고하여 집계함.
- 전국 전산망이 갖추어지면, 즉시보고 체계 구축

※ '장사시설 관리운영 평가' 시 자료구축 및 보고 결과를 평가항목에 포함

4.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1) 기본방향

-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는 자연경관의 보존유지와 효과적인 토지이용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장사시설의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의 장사시설 조성 필요.
- 지역산업 육성차원에서 접근.

2) 기본원칙

□ 부족시설 우선 공급

- 부족 화장장 우선공급
- 공설자연장지 확보
 - 자치단체별 공설자연장지 설치 의무화
 - 기존 공설(동)묘지 재활용
- 공설봉안시설 적정수준 유지
 - 자치단체별 공설봉안시설 설치 의무화
 - 유휴 봉안시설 적극 활용: 자치단체간 협정체결을 통한 위탁활용

□ 공급주체별 균형있는 장사시설 확충

- 장사시설별 적정수준의 공공시설 확보
- 민간자본의 적극 참여유도
 - ※ 민간투자법 대상에 장사시설 포함도록 개정

3) 장사시설별 설치·조성 방안

가) 기존묘지 재활용

- 자연회복 차원에서 식생후 재활용
- 장사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동시에 갖춘 종합장사시설로 조성

나) 화장시설 설치

□ 수요·공급일치하는 화장시설 보유노력

○ 기초자치단체시설: 시·군·구

-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나홀로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장 설립: 원스톱서비스 기능강화

○ 광역시·도립시설: 시·도

- 도시 밀착형 사회친화적 화장시설 공급
- 대중교통, 지하철 접근 등이 용이한/할 지역에 설치

○ 사설화장장

-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접근 : 한 곳에서 모든 장사서비스 - 장례, 시신 또는 골분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법인시설
- 묘지재개발지역 내 환경친화적 이동화장시설 설치

다) 봉안시설

- 공설시설 우선확보
-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인근 지역 유희시설 활용

라) 자연장지의 확보

- 신도시 개발시 친환경적 자연장지 확보
- 자연장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묘지시설 재활용
- 수목장림은 원칙적으로 중앙 또는 광역시, 시도에서 설치운영

나. 장사시설의 관리

1) 기본원칙

□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관리유지

- 자연친화적인 관리운영
- 지역사회친화적인 관리운영
-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

2) 관리운영 방법

가) 공공설치, 직접운영

- 자치단체가 시설설치, 관리·운영전담
- ※ 중소규모 시·군 에 적합

○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계속성과 공공성 제고 • 중소기업 분산설치 가능 • 부정적 외부성이 큰 장사시설 분산으로 교통 혼잡등 최소화 • 주민들의 시·군립 장사시설 접근성 용이 • 부정적 외부성 분산으로 넘비현상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예산과 인력 소요 • 관리·운영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관리부실 및 관련 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 가능 •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 넘비발생우려

나) 공공설치, 민간위탁

- 시·도 및 수도권 지역
 - 장사시설 대규모 집중설치
 - 종합장사문화시설 모델제시가능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및 관리비용(예산, 인력 절감) • 재원마련 용이 • 규모경제 효과로 시설의 현대화·공원화 가능(민간위탁가능) •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종합장사시설 설치 가능 • 넘비 발생지역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집중·대규모로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증가 • 필요한 대규모 부지 확보 곤란 • 원거리 주민 접근성제약 • 지역간 불균형 개발로 입지지역 주민의 반발 증가 • 넘비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과다우려

다) 민간설치, 직접운영

- 민간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관리, 국가 지도·감독
 - 재원조달: 민간섹터에서 필요한 모든 예산을 조달하여 시공
 - 예산 확보 용이
 - 민간전문기관의 전문 노하우 이용, 행정력 및 예산 절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합리화 통한 비용절감 • 새로운 지식과 정보 및 기술 활용, 경영합리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지자체와 민간 간 업무분담 및 공동책임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 및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촉진, 공·사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민간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시설과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을 적극 활용 및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 설치하는 초기에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수요가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관리운영의 어려움 존재 •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공공성 문제로 인해 경영수지 불균형 발생 가능, 이 경우 시설의 관리 및 경영 부실 가능 • 지나치게 영리 추구시 공공성 저해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가. 기존시설의 정비·확충계획

□ 후손들을 위한 친환경·친복지적 장사시설의 확충

- 조상들과 함께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설묘지의 재개발, 공원화 추진
- 개장지역은 자연 친화적 봉안당, 자연장지로 변경하고, 무연분묘를 개장하여 납골 또는 자연장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주변 지역은 지역주민 및 시설 이용자를 위한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 설치

1) 화장시설 확충

□ 장기적으로 공설시설이 바람직함

- 시설부족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소요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민간자본 적극유치
-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화장장설치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유도
- 택지개발 및 도로 건설 등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분묘이전발생 가능지역, 개장유골 화장을 위한 한시적 이동화장장 설치운영

□ 적기 공급원칙:

- 시설부족 개시 4-5년 전부터 건립시작

공급주체	공급규모	공급계획수립
광역시·도	중규모 10기 내외 (단, 수도권 15기내외)	시설부족 5년전
기초자치단체	소규모 5기 미만	시설부족 4년전

2) 봉안시설 확충

□ 공설봉안시설

-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설시설이 우선 설립되어야 함.
- 도심내에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 친화적 시설을 갖추어야함.

□ 사설봉안시설

- 봉안시설 투자는 자본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비용등의 증가로 시설이용가격을 상승시켜 수요자에게 전가됨.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설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만장이 된 자치단체들과 위탁계약을 통해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자치단체간 협약 지원방안 모색)

3) 자연장지 확충

- 자치단체별로 2-3개의 잔디형, 화초형 자연장지 확충
- 도시재개발의 경우, 접근성이 뛰어난 공원형 자연장지 의무적으로 확충
- 공설묘지재개발의 경우, 정원형 자연장지(잔디, 화초, 수목장) 확충
- 수목장림은 중앙, 시·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토록함(사유림 배제)

나. 자원조달방안

1) 국고지원예산의 안정적 확보

□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지원 기본원칙

-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행정절차 완료여부, 공급 긴급성, 지방비 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지원
- 환경(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인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집단민원 해소, 실시계획 등 제반여건 완료지역
- 광역, 특별시·도, 인근 지자체간 공동 설치·조성, 신도시 건립시 장사시설 설치 시 우선 지원

□ 국고지원 우선순위

- ① 계속사업
- ② 화장시설이 신·증축 사업
- ③ 화장로 개·보수 사업
- ④ 자연장 조성사업
- ⑤ 봉안당(담·벽) 신·증축 사업

□ 장사시설 사업 지원기준 단가 단계적 상향조정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신·증축
 - '09년 150만원 → '13년 230만원/m²(매년 20만원 상향)
- 자연장지 조성
 - '09년 10만원 → '13년 30만원/m²(매년 5만원 상향)
- 화장로 개보수(증설)
 - '09년 2억2천만원 → '13년 4억/로(매년 5천만원 상향)

□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방안

-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간 컨소시엄을 구성, 장사시설을 공동 건립하여 재원투자 부담 최소화
- 사설 법인묘지내에 장사시설 설치부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통한 토지수용 재원조달 해결
-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간부문 참여(BTL)로 민간재원 확보

2) 장사시설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자본 적극 유치

□ 장사시설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자본 적극 유치

- 중규모 이상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 수도권, 광역권 등
- 인센티브 비용지출 과다 예상 지역

□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방식 선택

- 정부의 재정여건, 시설확충의 시급성, 서비스제공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업편의의 효과가 크므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음.
-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은 독립채산형(Financially-Standing Project: BTO 등)과 서비스구매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 BTL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 장사시설의 공공재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국고·지방비)로 투자를 회수하는 BTL방식이 바람직함.

※ 민간투자방식의 장·단점

- 장점
 - 재원조달 용이
 - 민간전문기관의 전문 노하우 이용, 행정력 및 예산을 절감
 - 사업성에 따라 일정부분 수익 창출 가능
- 단점:
 - 지역주민의 갈등해소 인센티브비용 증가
 - 사용료 수입이 부진할 경우, 국고부담 증가
 - 장사서비스의 공공성 저해 우려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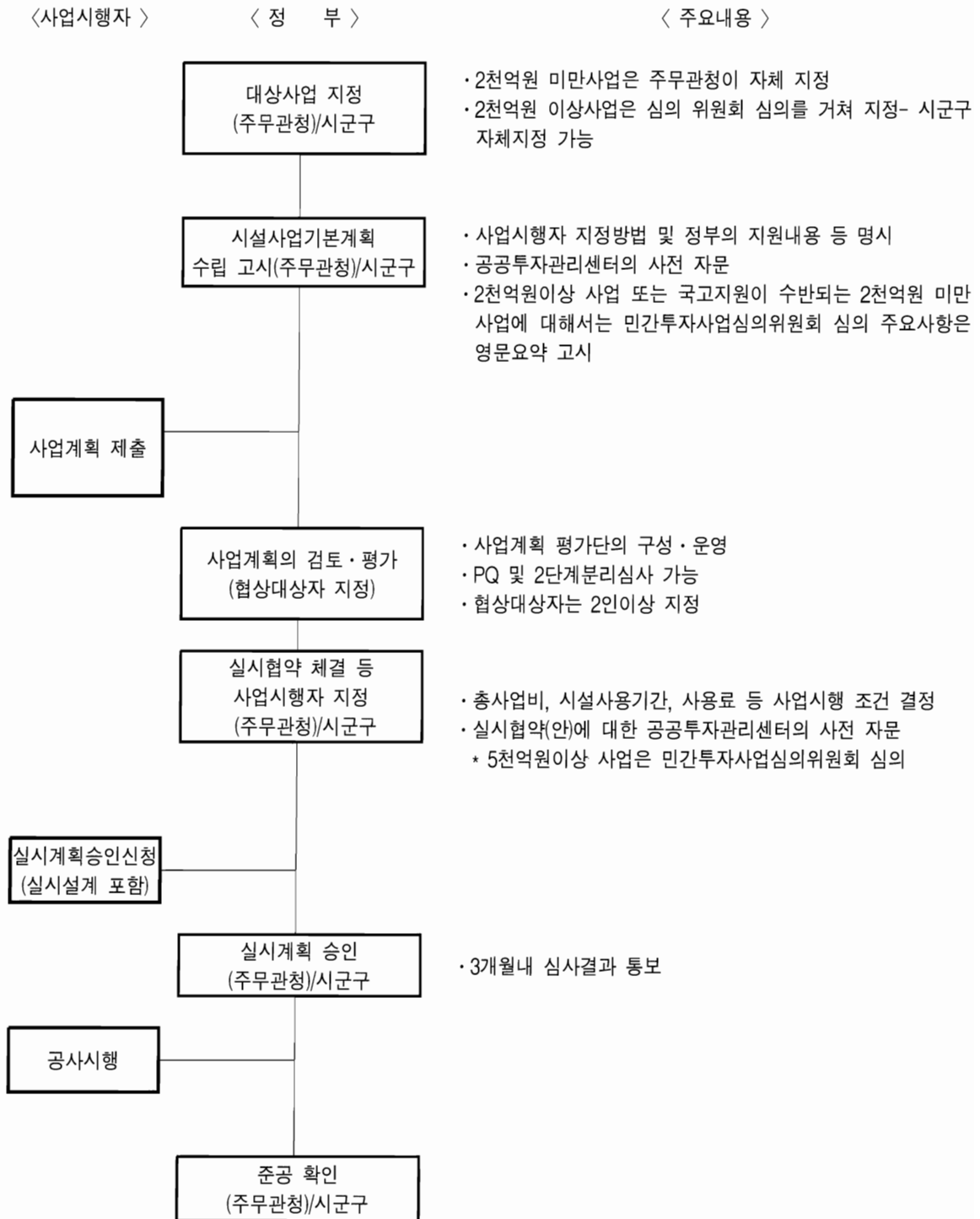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
- BTL(Build-Transfer-Lease)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민간부문이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BTO, BOT, BOO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추진 대상사업>

분 야	소관부처	사회기반시설 유형
도 로 분 야(3)	건설교통부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철 도 분 야(3)	건설교통부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 만 분 야(2)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 항 분 야(1)	건설교통부	공항시설
수자원분야(3)	건설교통부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환 경 부	수도
정보통신분야(4)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교통부	지리정보체계
에너지분야(3)	산업자원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환 경 분 야(5)	환 경 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유 통 분 야(3)	건설교통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분야(9)	문화관광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과학기술부	과학관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교육분야(1)	교육부	학교시설
국방분야(1)	국방부	군 주거시설
주택분야(1)	건교부	공공임대주택
복지분야(3)	보건복지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여성부	아동보육시설
산림분야(2)	산림청	자연휴양림, 수목원

※ 법개정을 통한 장사시설의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추가토록함.

< 시군구 공설장사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행 절차 >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분묘의 설치기간

-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 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임.
 - 설치기간 연장: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총 60년 설치)
 -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5 - 15년미만으로 설치기간 단축 가능

가. 분묘의 일제조사

- 법 제22조 묘적부 작성·관리는 가능한 한 전자적 방법으로 함.
- 조사방법
 - 제1단계: 전국적으로 자진신고기간 설정하여 묘지가 위치한 행정구역 파악
 - 개정 장사법에 대한 홍보를 겸하여 주소지에 분묘가 위치한 행정구역 신고
 - 지번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2단계: 통장, 이장 등을 통한 인근지역 묘지파악(필요한 경우, 일정 수당 지급)
 - 묘지별 사진촬영, 위치확인 가능토록 지표부착(GPS등)
 - 제3단계: 농한기 지역주민활용 방안(일정 수당 지급)
 - 인적이 드문 지역(산간지역)에 위치한 묘지관리를 위한 정보파악을 위해 주민을 활용
 - 묘지별 사진촬영, 위치확인 가능토록 지표부착(GPS등)

나. 무연분묘의 처리

- 법 제28조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와 유골은 화장하여 10년간 봉안해야 함.
 - ※ 법개정을 통해 직접 자연장할 수 있도록함.
- 무연분묘 개장 공고
 - 공고사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해야 함.
- 무연분묘 처리방법 결정
 - 영 제24조 2항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 사전고지를 통한 민원의 최소화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 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가.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 수급조정사유

- 지역별로 적정수준의 장사시설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확충해야 하지만, 그러나 수급계획과정에서 인근지역간 상호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지역주민 반대 또는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부지선정을 못하는 경우
 - ※ 부지는 선정했으나, 인근지역의 반대가 있는 경우
- 시군구의 상황을 시도에서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제시
 - 화장시설이 없는 인근지역(B)과 해당지역(A) 모두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시·도가 종합적으로 검토
 - 화장시설이 없는 해당지역(A)과 인근지역(B)중 모두 설치를 원하는 경우 ⇒ 상호 적정수준을 설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너무 과도한 시설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 존재 ⇒ 시·도가 종합적으로 조정
 - 화장시설이 있는 인근지역(B)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해당지역(A)에서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해결 ⇒ 시·도에서 조정
- 봉안시설 설치이용
 - 자치단체별로 공설봉안시설 확충
 - 신규 사설봉안시설의 확충은 가급적 억제하고, 유희 사설봉안시설 이용방안 강구
 - ※ 지자체간 사회협약차원에서 접근

나.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 공동설치 사유

- 화장시설
 - 해당지역(A)에 설치가능 부지가 없거나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인근지역과 공동으로 설치
 - 재원조달의 문제로 화장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지역(A)과 인근지역들간 공동으로 설치
 - ※ 공동설치의 경우, 종합시설의 내용, 규모등, 투자재원배분, 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한 합의 필요
- 봉안시설
 - 자치단체별로 공설봉안시설 이용방안 결정
 - ※ 관내주민의 범위, 이용연한 등

○ 자연장지

- 공설자연장지 또한 화장시설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

다.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조정

- 지역간 갈등은 지역주민의 갈등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에 어려움 존재
- 갈등 및 인센티브 내용 등을 시·도에서 조정 ⇒ 중앙정부에 의견 제시
 - ※ 시설설치지역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비용을 인근자치단체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
 - ※ 대안으로 지역간 타 비선호시설 -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적환장, 분노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교환설치·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 ⇨ 국고우선지원

■ 수급계획의 작성시 유의 사항

1. 내용 누락이 없을 것
2. 중장기 수급계획시 가능한한 외부용역은 최소화하고, 구축된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및 장사담당 공무원이 공동으로 작성
 - 도시계획수립시 산출된 인구, 재개발방향 및 용도지역 등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
 - 장사수요 선호도조사 자체적으로 수행
 - 예: 상주인구조사시 부가조사로 실시하는 방안 모색

※ 중장기수립계획 절차, 방법 등을 위한 담당공무원 보수교육실시

〈별첨 1〉

1. 중장기계획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

- 가. 용지규격은 A₄(210mm×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 나. 계획서의 표지는 자지체 자율적으로 하고, 좌철로 한다.
- 다. 내용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다.
- 라.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마. 각 부문별 계획내용은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 바. 계획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사. 자료집은 계획서외에 별도의 책자와 CD로 제출한다.

[부록: 집계표]

<표 1> 월별 출생자 수 및 사망자 수(1999-2008)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전년대비 증감
출 생 자 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 망 자 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표 2> 연도별, 성별 전입자, 전출자수(1999-200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순전입자수										
남자										
여자										
전입자수										
남자										
여자										
전출자수										
남자										
여자										

※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요구됨.

<표 3> 성별, 연령별 매장자수

<남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장자수											
연령계층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전년도대비	증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장자수		-									

<여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장자수											
연령계층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전년도대비	증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장자수		-									

<표 4> 성별, 연령별 화장자수

<남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화장자수											
연령계층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전년도대비	증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화장자수		-									

<여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화장자수											
연령계층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전년도대비	증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화장자수		-									

<표 5> 성별, 연령별 불안자수

<남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불안자수											
연령계층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전년도대비	증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불안자수		-									

<여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불안자수											
연령계층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전년도대비	증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불안자수		-									

<표 6> 성별, 연령별 자연장자수(※ 향후 자연장 활성화에 대한 집계표 임)

<남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연장자수											
연령계층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전년도대비	증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연장자수		-									

<여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연장자수											
연령계층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전년도대비	증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연장자수		-									